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사업자 행정처분 예정에 따른 안내사항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건설기계관리법 제35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자의 행정처분에 앞서 연명등록자에게 처분사항과 이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조치를 안내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사항 :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사업자 행정처분 예정에 따른 안내사항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0. 2. 24. ~ 2020. 3. 9. (2주간)
3. 행정처분 예정일 : 2020. 3. 10.
4. 공고대상 (마포구청 통합홈페이지 <http://www.mapo.go.kr/> 참고)

연번	공 고 대 상	우 편 번 호	주 소	비고
1	신*철	18277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로***번길 **~*	
2	굿**** 주식회사	04209	서울특별시 마포구 만리재옛길 **, ***~***호(신공덕동)	
3	신****기(주)	04031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길 **(서교동)	
4	공**기(주)	03978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길 **(성산동)	
5	서*석	02781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 ****(석관동)	
6	이*분	16636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로 **, ***동 ***호	
7	전*진	10130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수기로 **~**, ***동 ***호	
8	우**기(주)	03978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길 **(성산동)	
9	이*근	10923	경기도 파주시 중앙로 ***, ***호(금촌동)	
10	황**기(주)	04071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지길 ***~**, *층	
11	김*구	12506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용천로***번길 **	
12	대**건(주)	03993	서울특별시 마포구 연남로 *(등교동)	
13	김*열	13298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제일로 ***~*(태평동)	
14	이*선	12459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유명로 ****~**	
15	김*진	17968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현덕로 ****~**	
16	김*규	31565	충청남도 아산시 방축로 *, ***동 ***호(방축동)	
17	김*욱	17996	경기도 평택시 평성읍 남산안길 **~*, ***호	
18	대**건(주)	04050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 엘지팰리스빌딩 ****	
19	서*석	28633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청남로 ****~*, ***동 ***호	
20	이*준	10462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번지 **호 금산 나동 ***호	
21	이*영	32295	충청남도 홍성군 광천읍 광천로***번길 **~*	
22	장*호	10524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우원로**번길 **~*(행신동)	
23	최*정	41222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남로*길 **(신암동)	
24	박*래	63549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색달로***번길 **	
25	이*자	08748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로*길 ***~*	
26	이*순	10835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파발로**번길 **	
27	제**건(주)	04013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망원동)	
28	조*상	18413	경기도 화성시 병점*로 **, ***동 ***호	
29	㈜삼**기	04031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길 **(서교동)	
30	박*순	5509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상거마*길 **	
31	신*	49243	부산광역시 서구 옥천로 ****(아미동*가)	
32	정*일	03974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미산로*길 ***~*, ***호	

5. 공고내용

- 가. 건설기계사업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제2항에 의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건설기계사업자에 대한 같은법 제35조2제1항제3호에 따른 행정처분(등록취소)에 앞서 연명등록자에게 처분사항과 이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조치를 안내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반송)하여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 나. 상기 연명등록자께서는 행정처분에 의한 사업자 취소예정일인 2020. 3. 10.까지 다른 건설기계대여업 대표자와 공동사업을 하거나, 사업자에 등재되어 있는 건설기계를 자가용으로 용도 변경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 취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기계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 위반에 따라 최대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라. 아울러 건설기계사업이 취소가 된 후에도 변경신고 없이 계속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4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을 알려드립니다.
- 마. 상세내용 및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마포구청 교통행정과 (☎02-3153-9633)로 연락바랍니다.

2020년 2월 24일

마 포 구 청 장

